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123
----------	-----

제출년월일 : 2004. 11. 9.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공중화장실설치·관리 관련 규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공중위생법 등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있어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04. 1.29일자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7.29일 제정 공포되어 2004.7.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관리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 하도록 함. (안 제6조)
- 나.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함(안제6조)
- 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안제7조)
- 라.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내·외부 도색주기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정함(안 제9조)
- 마. 군수가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 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11조 내지 12조)
- 바. 공중화장실이 설치 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함(안 제14조 내지 제15조)
- 사.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함(안제16 조)
- 아. 공중화장실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필요
- 다. 관계부처승인: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필요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범위) ①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군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등)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교육) ①군수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깨끗

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 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3 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이동화장실설치·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동화장실의 관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 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 5 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 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 6 장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1」의 부과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제18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 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부과금액		
		1 차	2 차	3 차
1. 공중화장실의 설치명령에 불응한때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 명령 불응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 명령 불응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20 10	40 20	6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때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나.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 기준 위반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10 20	20 3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가. 제7조의 설치 기준을 위반한때 나. 제8조의 관리 기준을 위반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3호	20 10	40 20	60 30
4.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때	법제21조 제2항	5	10	20

【별지 제3호 서식】

체 호 유료화장실신고필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시설내역	시설내역	대 변 기 수			소 변 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의시설	세 면 시 설		에어타올(페이퍼타올)			환 풍 기	
1 회사용료		원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								

關係法令拔萃

□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증진 및 위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당해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의 처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9조 (개방화장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이동화장실)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유료화장실) ①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 (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관리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 (민간위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명령에 불응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자

②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2.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